

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2. 26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2. 26(의안 제11호)

2. 제안사유

-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내용 중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변경(제6조제3호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